

분당 노후계획도시 S4구역(분당동5) 특별정비계획 결정,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41번지의 ‘분당 노후계획도시 분당동5 특별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부터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정비 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 1. 19.

성 남 시 장

□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1. 특별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특별정비계획의 개요

- 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명칭 : 분당 노후계획도시 S4구역(분당동5) 재건축사업
- 나. 특별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정비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재건축사업	분당 노후계획도시 S4구역(분당동5) 특별정비구역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41번지	13,386.9	31구역 결합조건

- 다. 특별정비구역의 개발기간
 - 1) 기준년도 : 2025년
 - 2) 목표연도 : 2030년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분	명칭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13,386.9	100.0	-
공동주택용지	소계	13,145.4	98.2	-
	특별정비S4	13,145.4	98.2	-
정비기반시설 등	소계	241.5	1.8	-
	도로	241.5	1.8	-

3. 인구·주택 수용계획

구분		주택수 (세대)			구성비 (%)	인구수 (인)			구성비 (%)	비고
		현황	계획	증·감		현황	계획	증·감		
합 계		66	233	증) 167	100.0	152	536	증) 384	100.0	
전용 면적	60㎡이하	-	15	증) 15	6.4	-	35	증) 35	6.4	「2035년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상 지표를 준용하여 세대당 2.3인 적용
	60㎡초과 85㎡이하	-	41	증) 41	17.6	-	94	증) 94	17.6	
	85㎡초과	66	177	증) 111	76.0	152	407	증) 255	76.0	

4.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16	30	보조 간선 도로	3,862	대1-8	대1-13	일반 도로	당골공원	건교부고시 제410호 (95.12.22)	-
변경	대로	1	16	30~36	보조 간선 도로	3,862	대1-8	대1-13	일반 도로	당골공원	건교부고시 제410호 (95.12.22)	

나)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2-16	대로 1-16	- 폭원 변경 및 규모별 구분 변경 30m → 30~36m - 대로2-16 → 대로1-16	증가하는 세대수를 고려하여 도로 확폭, 버스베이 설치, 가감속차로 계획 등에 따른 도로 3~6m 확폭

5.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계획

가. 공원·녹지 조성계획

구분		계획내용
공원·녹지		○ 대상지는 소규모 구역으로 공원·녹지 의무 확보면적은 없으며, 조경 등으로 조성
환경 보전	자연환경	○ 조경계획을 반영하여 녹지면적 확보
	생활환경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LNG)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시행 시 환경영향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6. 교통계획

구분	계획내용
주변가로 및 교차로	○ 사업지 주변 교차로 신호운영 최적화 방안 제시(12개소)
진출입 동선	○ 사업지 진출입교차로 운영계획 수립 - 우회전 진입, 우회전 진출, 신호교차로
	○ 진출입구 적정 회전반경 확보(R=6.0m)
보행	○ 보행단절구간 횡단보도 설치 : 1개소
주차시설	○ 법정주차대수 : 285대 ○ 주차수요대수 : 292대 ○ 계획주차대수 : 470대 - 법정주차대비 : 164.9% - 주차수요대비 : 161.0%
교통안전 및 기타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차량 유출입부 차량경고등 : 1개소 - 노면표시 설치

※ 교통계획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결정도서 참조

7. 경관계획

○ 결정도서 참조

8.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가. 특별정비구역의 경계

구분	정비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재건축사업	분당 노후계획도시 S4구역(분당동5) 특별정비구역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41번지	217,650.1	31구역 결합조건

나. 제2조제6호 각 목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9.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별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계획

가. 용도지역(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3,386.9	-	13,386.9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3,386.9	-	13,386.9	100.0	-

10.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재건축 사업	분당 노후계획도시 S4구역(분당동5) 특별정비구역	13,386.9	특별정비 S4	13,145.41	분당동 41번지	공동주택	60% 이하	275% 이하	130m 이하/ 25층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233세대 (임대주택 21세대 포함)								
		건립규모					세대수		비율(%)	
		합 계					233		100.0	
		60㎡ 이하					15		6.4	
		60㎡ 초과 85㎡ 이하					41		17.6	
		85㎡ 초과					177		76	

※ 건축계획은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변경될 수 있음

11. 공공기여계획

가. 공공기여금 산정금액(안)

대지면적 (공공기여 기준면적)	중전용적률	기준용적률	정비용적률	㎡당 토지단가 (종후가치 추정)
13,386.9㎡	90%	250%	275%	8,070,000원/㎡

공공기여 면적				공공기여금 산정금액			
1구간 (10%)	2-1구간 (41%)	공공기여 추가 (부지면적 2%)	합 계	1구간 (10%)	2-1구간 (41%)	공공기여 추가 (부지면적 2%)	합 계
16%	10.25%	2%	28.25%	173억	111억	2억	305억
2,141.9㎡	1,372.2㎡	267.7㎡	3,781.8㎡				

※ ㎡당 토지단가는 추정치 금액으로 추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변동될 수 있음

나. 공공기여 제공계획(안)

산정방식	○ 기반시설 - 공사비(공사비 x 설치면적) + 부지가액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5항 후단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사용기준을 고려 산정
도로	○ 기반시설 설치비용 - 공사비 : 173,000원/㎡(부가세 포함) - 설치비용 : 157,273원/㎡ x 241.5㎡ = 37,981,364원 - 공공기여금 : 37,981,364원 + 1,948,905,000원 = 1,986,886,364원

도로 설치비용	+	공공기여금 현금납부	=	합 계
1,986,886,364원		28,532,233,584원		30,519,119,948원

※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에 따라 추후 생활 SOC시설 설치, 공공기여 방식·인정 여부 등은 우리 시 용역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공기여금/공공시설/기반시설 제공계획은 개발계획 변경 시 조정될 수 있음

12. 임대주택 건설 등 특별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와 소규모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주거대책
가. 민간임대주택 확보계획(안)

○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평가기준 및 선도지구 지정 조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확보

구 분	규 모	세대수(세대)	비율(%)	비 고
민간임대주택	계	21	100.0%	○ 증가 세대수의 12% 이상 확보 - 현황 세대수: 66세대 - 계획 세대수: 233세대 - 증가 세대수: 167세대
	60㎡ 이하	8	38.1%	
	60㎡ 초과 85㎡ 이하	13	61.9%	

나. 거주자 이주대책

- 금융기관 선정을 통해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이주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반영
- 관리처분계획안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활용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이주를 위한 이주비 대출이 실행될 예정

13. 녹색건축 등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계획

가. 장수명주택 인증

○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및 선도지구 지정 조건에 따라 장수명주택 인증 양호 등급 이상 필요

구 분	확 보 기 준	비 고
장수명주택 인증	양호 등급	-

※ 세부사항은 결정도서 참조

14.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골재 사용 계획

○ 결정도서 참조

15.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결정도서 참조

16.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 100% ○ 추정비례율: 132.71% ⇒ (454,988백만 - 279,806백만) / 132,000백만 × 100 = 132.71% - 총수입 추정 : 454,988백만 - 총지출 추정 : 279,806백만 - 종전자산총액 추정 : 132,000백만		
개별 종전 자산 추정액	○ 대지권 또는 지분과 건물을 일체로 각각의 집합건물을 본건 및 인근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가격을 추정(전유면적당 단가 × 전유면적)		
추정 분담금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	추정 권리가액(b)	추정분담금(a-b)
	전용 59㎡형	11.0억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 (111.58%)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
	전용 84㎡형	14.1억	
	전용 104㎡형	16.1억	
	전용 115㎡형	17.7억	
	전용 135㎡형	20.3억	

※ 세부사항은 결정도서 참조

※ 관리처분계획수립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성남 분당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중 금회 변경 결정되는 부분만 수록함)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2.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변경없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16	30	보조 간선 도로	3,862	대1-8	대1-13	일반 도로	당골공원	건교부고시 제410호 (95.12.22)	-
변경	대로	1	16	30~36	보조 간선 도로	3,862	대1-8	대1-13	일반 도로	당골공원	건교부고시 제410호 (95.12.22)	

나)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2-16	대로 1-16	○ 폭원 변경 및 규모별 구분 변경 - 30m → 30~36m - 대로2-16 → 대로1-16	○ 증가하는 세대수를 고려하여 도로 확폭, 버스베이 설치, 가감속차로 계획 등에 따 른 도로 3~6m 확폭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주거용지

1) 연립주택용지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폐지	C11	-	C11-10	-	C11-10	-	분당동 41	-	13,386.9	-	특별 정비 계획 수립에 따른 폐지

2) 아파트용지

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신설	-	특별 정비 S4구역	-	특별 정비 S4	-	특별 정비 S4	-	분당동 41	-	13,145.4	특별 정비 계획 수립에 따른 신설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주거용지

1) 연립주택용지

가) 기 정

도면번호	위치(획지번호)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C11	C11-1-1	용 도	○ Y2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연립주택(분양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	건폐율	-	-
	-3	용적률	○ 90% 이하	-
	-4	높 이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66조 참조	-
	-5	배 치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64조 참조	-
	C11-3-1	형 태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65조 및 제67조 참조	-
	-2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68조 참조	-
	-3	건축선	-	-
	-4	주호의 규모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63조 참조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5			
	C11-10			

나) 폐지: 획지 C11-1-1~C11-1-6, C11-3-1~C11-3-5, C11-10

-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연립주택용지 폐지 및 아파트용지 신설

2) 아파트용지

가) 신 설

도면번호	위치(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 고
특별정비 S4구역	특별정비 S4	용도	○ 허용용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75% 이하	
		높이	○ 높이 : 130m 이하 (최고층수 : 25층 이하)	
		건축선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결정도 참조	

□ 기타사항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추후 사업시행계획수립 전 별도 고시 예정
- 기존 분당 지구단위계획에서 변경되는 내용에 한하여 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조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변경없음
- 2025년 제9차('25.12.15)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조건부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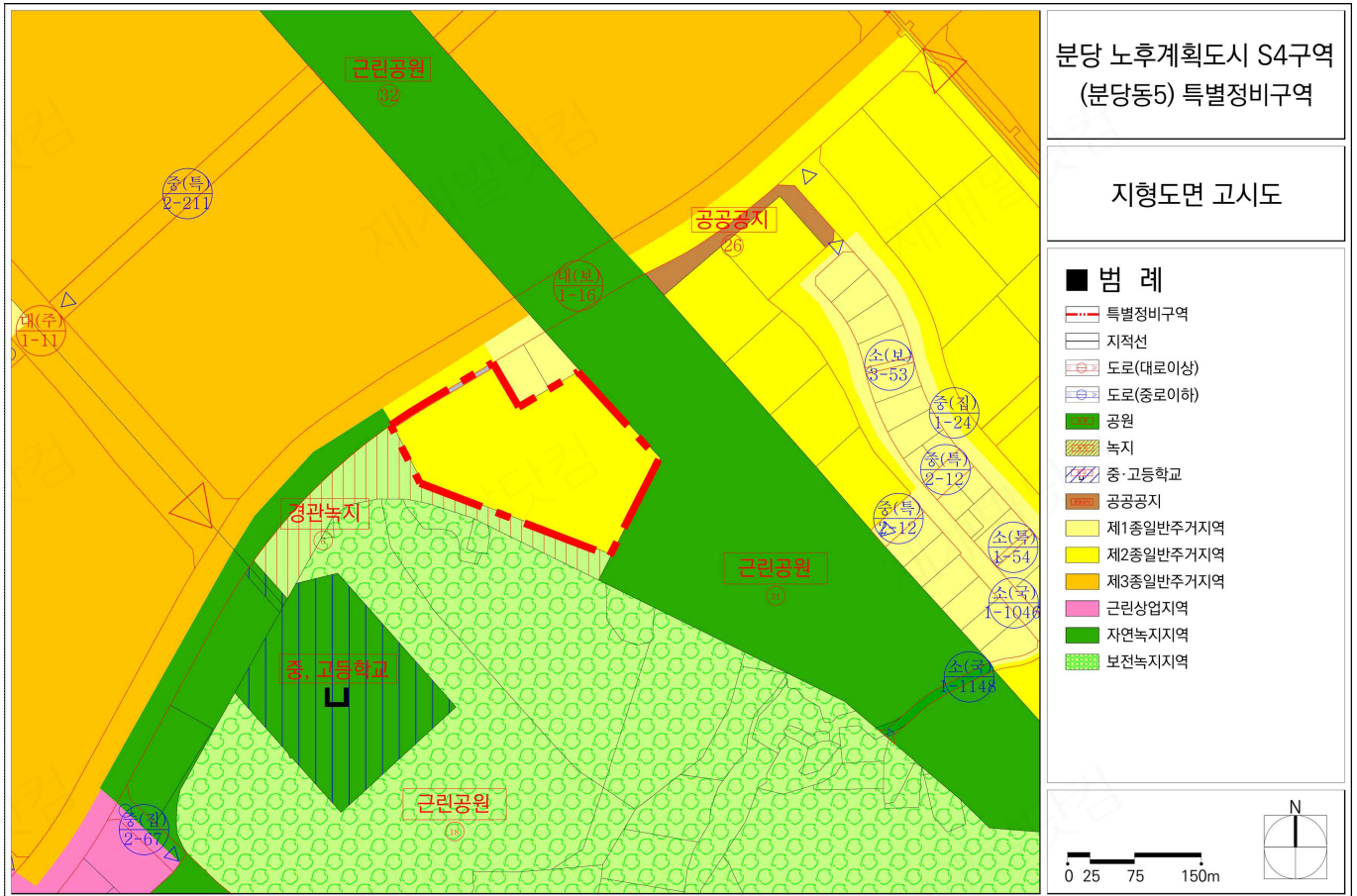
연번	심 의 조 건	조 치 계 획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 반영]		
1	○ 보행자전용도로는 폐도 대신 지상권 설정을 위해 상부만 도로로 입체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상부 도로는 조성 후 기부채납 검토	○ 보행자전용도로는 사유지로 매각 이후 유상매입하여 기존 보행자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동-서 보행자전용도로를 신설(폭원 15미터, 입체적 결정(지하1m, 지상 전체))하고 사업시행자가 조성 후 공공에 무상으로 구분지상권을 양도하겠음
2	○ 아파트 상가 지하에 계획한 공영주차장의 설치 재검토	○ 공영주차장의 위치를 아파트 상가 지하에서 당골공원변으로 이동하여 재검토하였음
[특별정비구역 결합신청 전 반영]		
3	○ 자문위원회 자문, 경기도 및 관계부서 협의, 심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추후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변경 절차 이행	○ 추후 특별정비구역 결합신청 전까지 자문, 경기도 및 관계부서 협의, 심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변경 절차 이행토록 하겠음
4	○ 생활 SOC시설 설치, 공공기여 방식·인정 여부 등은 우리 시 용역 결과에 따라 변경 반영	○ 생활SOC 설치 및 공공기여 방식 및 인정 여부 등은 시 용역 결과에 따라 결합 전까지 변경 반영하겠음
5	○ S4구역 불정로에서의 경관·교통 등을 고려하여 층수 등 건축계획 재검토	○ 추후 특별정비구역 결합신청 전까지 S4구역 경관, 교통 등을 고려하여 층수 등 건축계획을 재검토하겠음
6	○ 종전 기반시설 면적 고려하여 기반시설 등 설치 계획 보완	○ 종전 기반시설 면적은 55,795.0㎡(공공공지 : 6,307.2㎡, 도로 : 6,858.5㎡, 공원 : 31,128.8㎡, 학교 : 11,500.5㎡)이며, 신규 계획한 기반시설 면적은 54,938.4㎡(공공공지 : 6,308.0㎡, 학교: 11,500.5㎡)임 추후 결합신청 전까지 신규 기반시설 면적을 보완하도록 하겠음

※ 특별정비구역 결합 신청 전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을 특별정비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함

※ 선도지구 공모시 31구역, S4구역은 통합(결합)을 조건으로 선정된 사업이므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각각 구역 지정한 후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통합(결합) 절차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 해당 관계도서 및 지형도면 등은 성남시청 신도시정비과 신도시정비팀(☎031-729-3708)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성남시 분당구 고시 제2026-1호

고 시 문

1. 하천법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라 하천 점용을 허가하고 허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분당구 구조물관리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일

성남시 분당구청장

하천의 명칭	탄 천		
점용자의 성명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사업소	점용자의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68
점 용 위 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99번지		
점 용 면 적	1,088㎡		
점 용 목 적	지역난방 배관 긴급보수공사	점 용 개 요	-
점 용 기 간	2025. 12. 6. ~ 2026. 1. 24. 2026. 2. 23. ~ 2026. 3. 4.	기 타 사 항	열배관 누수 추정 에 따른 긴급굴착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2026-19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성남시 수정구청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代성남판교사업본부)		
	대표자 (성명)	권○혁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소하천명		외동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수정구 금토동 150-18번지 등 5필지		
	면적	104.55㎡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4. 12. 1. ~ 2026. 12. 31.		
	목적 및 사유	외동천 우회도로 가설교량 보도 설치		

열람서류

1. 관계 도서 및 조서는 수정구청 건설과에서 열람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2026-20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성남시 수정구청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代성남판교사업본부)		
	대표자 (성 명)	권○혁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소하천명		외동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수정구 금토동 150-18번지 등 5필지		
	면적	177.80㎡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4. 12. 1. ~ 2026. 12. 31.		
	목적 및 사유	외동천 우회도로 가설교량 차도 설치		

열람서류

1. 관계 도서 및 조서는 수정구청 건설과에서 열람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2026-21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성남시 수정구청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한국지역난방공사 판교지사		
	대표자 (성명)	정○기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88
소하천명		외동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수정구 금토동 410-46 외 4		
	면적	일시: 444㎡ 영구: 180㎡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일시점용: 2025. 4. 24. ~ 2026. 3. 31.(변경) 영구점용: 영구		
	목적 및 사유	금토지구 도로확장에 따른 열수송관 이설공사 (관로매설)		

열람서류

1. 관계 도서 및 조서는 수정구청 건설과에서 열람

문화공원 내 불법행위[무단점유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노점상행위 관련물품 적치 및 기타 공원 내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제2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의무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 19.

성 남 시 분 당 구 청 장

1. 공고내용: 문화공원(야탑,관교,정자,오리) 내 무단점유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 19. ~ 2026. 1. 22.(4일간)
3. 공시송달 대상(불법행위 현황)

연번	위 치	행위자	불법행위현황	공시송달 사유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9-5번지, 359-7번지 및 364-2번지 백현동 533번지 및 536번지 정자동 26번지 구미동 196번지	미 상	노점상행위 및 관련 물품 적치 등 공유재산 무단점유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음

4. 공고장소: 게시판 및 관보(시보), 성남시 홈페이지
5. 문 의 처: 성남시 분당구 녹지공원과 공원1, 2팀(☎031-729-7463, 8092)

6. 공고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노점상행위 관련물품 적치 및 기타 공원 내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합니다.
 - 본 처분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분당구 녹지공원과 공원1, 2팀(☎031-729-7463, 80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대집행 영장 1부.

2.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1부.

3. 위치도 1부. 끝.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40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문화공원(야탑,판교,정자,오리)무단점유 행위자** 귀하

주소 **문화공원(야탑,판교,정자,오리): 야탑동 359-5번지, 359-7번지 및 364-2번지, 백현동 533번지 및 536번지, 정자동 26번지, 구미동 196번지**

2026년 1월 12일,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22호 및 교부를 통해 귀하 소유의 노점 및 노상적치물 등 무단점유행위 물품을 2026년 1월 15일까지 철거 후 원상회복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분당구청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26년 1월 23일 ~ 12월 31일	분당구 녹지공원과	과장	박재석	향후 추산 (장비 임차비용 등 대집행에 소요한 비용액)
	분당구 녹지공원과	공원1팀장	문정환	
	분당구 녹지공원과	공원2팀장	정지운	

2026년 1월 19일

성 남 시 분 당 구 청 장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40호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소 속: 성남시 분당구 녹지공원과

직위(직급): 녹지공원과장, 공원1팀장, 공원2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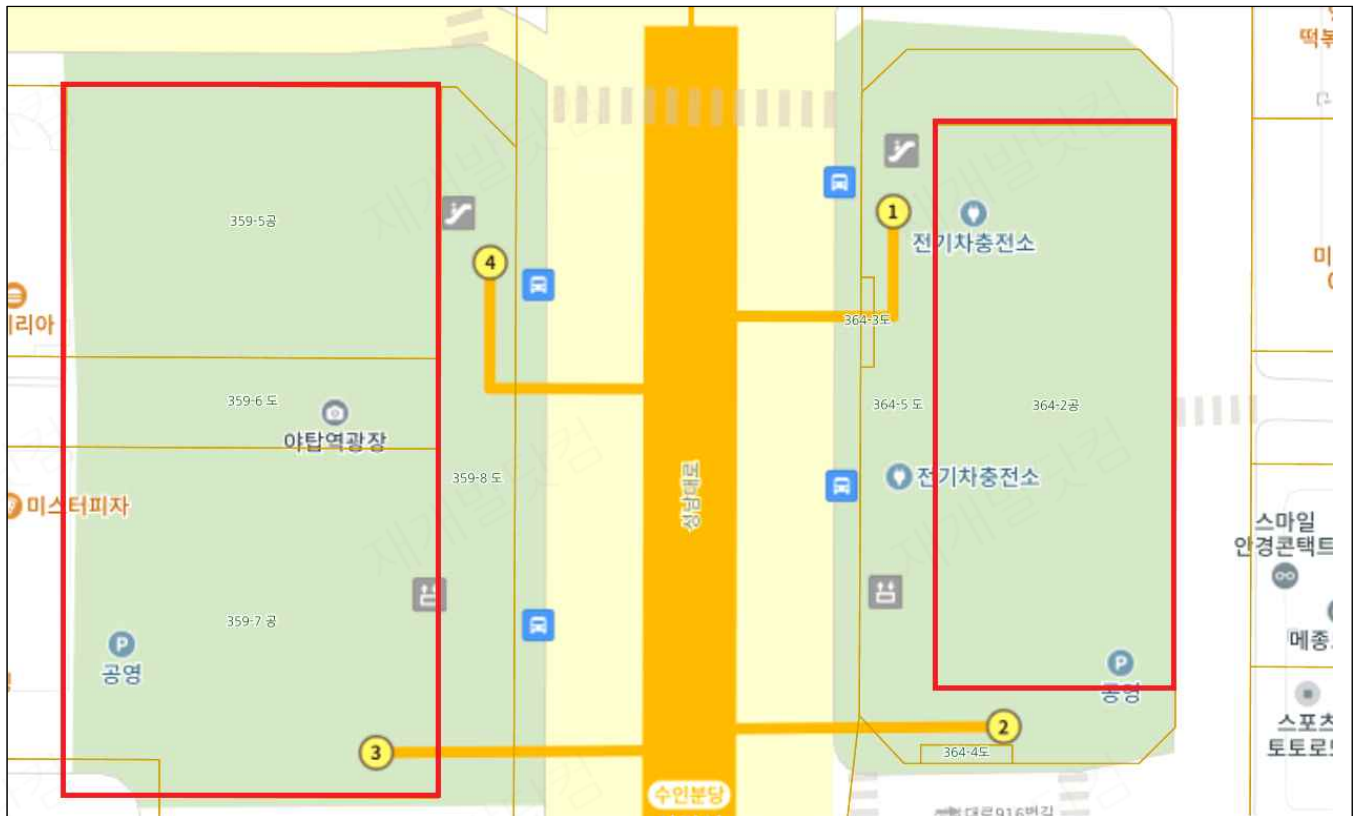
성 명: 박재석, 문정환, 정지운

위 사람은 2026년 1월 19일,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40호 행정대집행
영장으로 통보한 담당 행정대집행 책임자임을 증명합니다.

2025년 1월 19일

성 남 시 분 당 구 행 장

□ 위치도



아탑 문화공원(아탑동 359-5, 359-7, 364-2)



판교 문화공원(백현동 533번지, 백현동536번지)

